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6. 27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3년 5월 4일
- 나. 발 의 자: 우경란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5월 1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6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우경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수여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 규정을 보완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(안 제8조)
-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범위 정비 및 공적심사 자료의 공적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근거 신설(안 제11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수여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 규정을 보완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발의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**안 제8조(표창의 방법 및 부상)**는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을 별지 서식에 따르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, 표창의 종류¹⁾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함. 또한,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“「공직선거법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”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범위를 한정함.
- **안 제11조(공적심사)**는 표창권자가 표창 대상을 결정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,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 또한,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적사실의 확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.
- **현 조례 제11조(공적심사)**의 단서 규정인 “위원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”는 내용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**안 제12조(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제6항**으로 이동시킴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수여와 관련하여 현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표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1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」 제3조: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정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5. .

발의자: 우정란, 유승용, 김지연
이순우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수여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(안 제8조)
- 나.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범위 정비 및 공적심사자료의 공적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근거 신설(안 제11조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 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영등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의회발전”을 “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발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 중 “행할 때에는”을 “하는 경우에는 「공직선거법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의회 의원”을 “영등포구의회 의원”으로, “의회 사무국장”을 “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적심사는 표창의 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심사자료에 의하며, 표창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적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

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영 등 포 구 의 회 ----- -----.
제5조(표창장 수여대상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	제5조(표창장 수여대상) ----- -----.
1.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, 헌신적인 봉사으로써 <u>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</u>	1. ----- ----- <u>영등포구의회</u> <u>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발전</u> -----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8조(표창의 방법 및 부상) ①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<u>의한다</u> . <u><단서 신설></u>	제8조(표창의 방법 및 부상) ① ----- ----- <u>따른다. 다만, 표</u> <u>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</u> <u>일부 변경할 수 있다.</u>
② 제1항의 표창을 <u>행할 때에는</u>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	② ----- <u>하는 경우에는 「공</u> <u>직선거법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</u> <u>서</u> -----.
제9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<u>의회 의원</u> 또는 구청장, <u>의회 사무국장</u> 및 기관·단체장이 추천한다.	제9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 ----- <u>영등포구의회</u> <u>의원</u> -- <u>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</u> -----.
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<u>의한</u> 표창	②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

대상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공적심사)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. 다만, 위원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2조(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,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

③ ~ ⑤ (생략)

<신 설>

제11조(공적심사)

①

- . 다만,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공적심사는 표창의 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심사자료에 의하며, 표창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적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장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